



제 1조(목적) 대구대학교와 유은복지재단 나눔공동체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함)는 장애인의 자립과 직업재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,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더불어 관련 분야 인재 양성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내용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협력하고,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.

1. 장애인 직업재활과 자립 지원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2. 재학생의 현장실습 및 직무체험 제공
3.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활동의 연계 운영 및 1365 실적 인증 협력
4. 장애인 직무재활 현장 기반 교육 콘텐츠 공동 기획
5. 장애인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교육 및 전문 멘토링 협력
6. 기타 양 기관의 교류에 필요한 제반 사항

제 3조(협약의 이행) 양 기관은 신의를 바탕으로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며,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요 사항을 함께 추진한다.

제 4조(업무추진 방식 및 정보 공유)

1.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하며,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와 자원을 적극 공유한다.
2.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협력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피드백을 반영하여 사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.

제 5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교류 활동을 통한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한다.

제 6조(효력) 본 협의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일방이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매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고, 협약당사자의 대표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5년 4월 16일



대구대학교
DAEGU UNIVERSITY

총 장 박 순 진



원 장 권 남 규

